

# 이 유

## 1.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건물은 00선 지상구간을 지하 복선 전철공사를 진행한 구간에 인접해 있으며, 2014년부터 시공을 하였음
- 신청인은 다른 곳에서 근무하여 안전진단 시 부재중이어서 건물 내부에 대한 피해조사가 누락된 바 있으며, 2016년 4월초 재조사에서도 1층 내·외부만하고 2층은 조사하지 않고 생략하여 1층의 피해만 가지고 배상금액을 산정한 것임
- 1·2차 조사 시에도 부재중 연락처가 있었음에도 한번도 연락이나 문의가 없었으며, 조사에 응한 건물은 보상 및 수선을 해주고, 문이 잠겼거나 하는 건물은 조사를 누락시켜 보상책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음
- 2017년 3월16일에 재조사 및 보수를 조사업체에 요구하였으나, 보험사 책정금액 00여만 원 내에서 공사를 해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임시보수는 거절한 바 있음
- 2017년 4월 초순 현대 측(000대리)을 만나 피해대책을 논의코자 했으나, 이전 주장을 펼치고 위로의 말은 없이 소송 등을 진행하라는 경고성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가 심했음

### 나. 피신청인의 주장

- 당사는 00선 00역~00 간 복선전철을 신설할 목적으로 2009년 4월10일~2017년1월31일까지 00역~00역 구간 공사를 시행한 바 있음
- 공사구간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착공 전·후 공사장 인근 건축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사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규명하여 기 보상한 바 있음

-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시행결과에 따라 공사 전·후의 피해발생 부분(균열 등)에 한하여 2차 면담을 통하여 보상(보수 및 마감공사, 보상액 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과도한 요구(리모델링 1,500만원)로 인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임
- 신청인 건물은 사전정밀조사 당시에도 축조 된지 이미 30년을 초과한 상태였고, 다수의 균열이 발견되었으며, 공사 전·후 건물 기울기 변화는 없었으며, 건물 노후에 따른 균열발생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균열보수 후에 미장, 방수공사를 제안한 바 있으나 거절당함
- 신청인은 지인을 통해 보수견적을 받아 재협의를하겠다고 하였으나, 적절한 업체가 없어 현대 측에 소개를 요구하여 “000”을 추천해 주었고, 현장 조사 시에 1천만 원 이상의 견적이 산출을 요구하였다고 하며, 이에 오래된 건물로 현 상황에서의 보수공사를 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였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당사는 상기 균열보수 외에 추가적으로 내벽 페인트 도장까지 제안한 바 있으나, 1천만 원 이상의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수용함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2. 사실조사 결과

### 가. 분쟁지역 현황

- 분쟁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신청인 건물을 중심으로 00로, 00로 (왕복6차선)와 접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전철공사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사건임

## 나. 신청인 건물현황

- 용도지역 : 상업지역
- 연 면 적 : 20.06 $m^2$
- 규 모 : 지상2층
- 주 용 도 : 주택 및 점포
- 구 조 : 연와조
- 사용승인 : 1958.6.1(사용승인 후 60년 경과)
  - 1995년경 조적조 변경 공사

## 다. 피신청인 공사현황

- 공 사 명 : 00선 00~00 간 복선전철공사(1공구)
- 규 모 : 2.364km
- 공사기간 : 2009.4~2017.1
- 시 공 사 : 00건설(주)

##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 가. 진동 평가 방법

- 현지조사와 기 제출되어진 관련 자료 및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 투입장비 중 가장 진동레벨이 높은 건설장비에 의한 신청인 건물의 진동도를 예측하였음
- 피신청인의 현장에서 굴착공사 시 사용한 장비는 천공기(항타기), 백오후, 덤프트럭 등이며
- 굴착면과의 최단이격거리는 약 13.76m에서 천공기를 사용했을 때의 최대진동속도(VL)는 한국환경정책 연구평가원의 추정식을 사용하면 0.66cm/sec(kine)임

## 4. 판 단

- 공사로 인한 추정진동속도는 굴착공사 시에 최대 0.66cm/sec으로 조적조 건축물 허용기준치 0.35(=0.7\*0.5)cm/sec 이상으로,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5. 배상수준 검토

###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 00건설(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규정에 의거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나. 배상범위

- 건물균열로 인한 물질적 피해액은 진동속도가 피해 인정수준인 0.35cm/sec를 초과한 신청인 000에게 배상 한다.
  - 배상액은 단위면적당 건물 신축단가(795,000원/ $m^2$ )×연면적(20.06 $m^2$ )×손상정도(25%)×진동기여도(60.4%) 고려하여 산정한다.

### 다. 배상액

-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배상액 2,408,100원, 재정신청 수수료 7,220원을 추가하여 합계 2,415,320원이다.

## 6. 결 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결과, 관련서류, 전문가 의견, 유사 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